

Vol.1525

법원공보

2017. 8. 1. TUE.



법원행정처

● 목 차

내 규	1109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1111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예 규	1113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126	

● 내 규

◎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87호 2017. 7. 11. 결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9항 업무내용란 중 “비법관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원 채용”을 “비법관재판연구관, 재판연구원 및 연구위원 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10. 인사총괄심의관

10. 인사총괄심의관

일련 번호	업무내용	대법 원장	차장	전결자	
				차장	심의관
1~8	(생략)				
9	기본계획 수립 및 채용계약 체결	○	○		
	비법관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원 채용		○	○	○
10	(생략)				

개 정 안

[별표]10. 인사총괄심의관

10. 인사총괄심의관

일련 번호	업무내용	대법 원장	차장	전결자	
				차장	심의관
1~8	(현행과 같음)				
9	기본계획 수립 및 채용계약 체결	○	○		
	비법관재판연구관, 재판연구원 및 연구위원 채용		○	○	○
10	(현행과 같음)				

◎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88호 2017. 7. 13. 결재)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자격”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u></p> <p>1. <u>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u></p> <p>2. <u>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u></p> <p>④ <u>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자격은 법관이나 법원 직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1. ~ 3. (생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u></p> <p>③ <u>위원은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u></p> <p>④ <u>위원-----</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직무) ① (생략)</p> <p>② <u>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인 위원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부위원장-----</u> -----.</p>

예 규

◎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34호 2017. 7. 11. 결재)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2. 가.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 용 범 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I. 2. 라.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로 한다.

II. 3. 나. 의 제목 “5급(상당계급 포함, 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을 “6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II. 3. 나. 1)의 단서 중 “비서관·비서”를 “비서”로 한다.

II. 3. 나. (예 : 중 “5·6·7급의 통합, 6급과 7급 통합”을 “6급과 7급 통합”으로 한다.

II. 3. 나. (예 :의 예시1 중 “기능직 기능 7급 3명·기능 8급 2명·기능 9급 5명”을 “일반직 행정사무 7급 3명·행정사무 8급 2명·행정사무 9급 5명”으로 한다.

III. 2. 가. 2)의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III. 2. 가. 2). 나) 중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상당 이하 비서관·비서”를 “6급 상당 이하 비서”로 한다.

III. 2. 가. 2). 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930호, 2012. 10. 17.) 별지 제6호 서식”을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1103호, 2017. 1. 31.)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III. 2. 나. 1) 중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비서관·비서제외)”를 “6급 이하(비서제외)”로 한다.

III. 2. 나. 3). 나)의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이하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III. 2. 나. 4). 가)의 표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를 “6급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로 한다.

IV. 1. 가.의 단서 중 “4급 공무원 및 별정직 중 비서관·비서”를 “별정직 중 비서”로 한다.

IV. 2. 가. 중 “5급(과장급 직위 제외)”을 “6급”으로 한다.

V. 1. 가. 3)의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V. 1. 가. 3). 가)의 단서 중 “별정직 중 5급 상당 이하 비서관·비서”를 “별정직 중 6급 상당 이하 비서”로 한다.

VII. 2. 나. 3)의 제목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실 적 가 점 평 가 서

(6급 이하 공무원)

○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실적내용을 평가하여 평정자·확인자가 각 3점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되, 계급을 통합하여 지급단위로 한 경우에는 계급별, 서열순으로 작성함.

지급단위(직급 또는 계급) :

서 열	소 속	직 급	성 명	실 적 내 용	평 정 자 가점(7점)	확 인 자 가점(7점)	총 점 (14점)

평 정 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 실적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가능

※ 확인자단위의 지급단위별 평정대상자 전원을 통합하여 평가한 후 평정자 전원과 확인자가 함께 연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I. 총칙

- 1. (생략)
- 2. (생략)
- 가. (생략)
- 1) (생략)

적용 범위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상당 이하
전문 경력관	전체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및 「법원공무원규칙」 별표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 전체

나. ~ 다. (생략)

라.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연봉제 적용대상

II. 지급기준

- 1. ~ 2. (생략)
- 3. 지급단위
- 가. (생략)
- (1)~(2) (생략)
- 나. 5급(상당계급 포함, 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
- 1) 다만, 별정직 중 비서관·비서는 별도의 지급단위로 세분하여 상당계급별로 지급한다.
- 2) ~ 3) (생략)
- (예 5·6·7급의 통합, 6급과 7급 통합, 8급과 9급 통합)

개정안

I. 총칙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적용 범위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전문 경력관	나군 및 다군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 -----

II. 지급기준

- 1. ~ 2. (현행과 같음)
- 3. 지급단위
- 가. (현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 나. 6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
- 1) ----- 비서 -----
- 2) ~ 3) (현행과 같음)
- 예) 6급과 7급 통합, 8급과 9급 통합

현 행

<예시1 소수 인원을 통합하는 경우>

- (생 략)
- (생 략)
- 기능직 기능 7급 3명·기능 8급 2명·기능 9급 5명인 경우 전계급 통합 가능

III.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 2. (생 략)

가. (생 략)

2) 5급(과장급 직위 제외)이하 공무원

가) (생 략)

나) 5급(과장급 직위 제외)상당 이하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930호, 2012. 10. 17.) 별지 제6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서’의 ‘3. 근무성적평가’의 총점(100점 만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나. 실적가점평가

1) 실적가점 평가대상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적가점 평가는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비서관·비서제외) 및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실적가점요소

3) 실적가점 평가방법

가) (생 략)

나) 5급(과장급 직위 제외)이하 공무원

4) 실적가점 평가시기

가) (생 략)

개 정 안

<예시1 소수 인원을 통합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반직 행정사무 7급 3명·행정사무 8급 2명·행정사무 9급 5명-----

III.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2) 6급 이하 공무원

가) (현행과 같음)

나) 6급 상당 이하 비서-----

-(대법원행정예규 제1103호, 2017. 1. 31.)
별지 제4호 서식-----

나. 실적가점평가

1) 실적가점 평가대상

-----6급
이하(비서제외)-----

2) 실적가점요소

3) 실적가점 평가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6급 이하 공무원

4) 실적가점 평가시기

가) (현행과 같음)

현행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		
근무성적 평정점수 (100점) - 근무성적 평정 중 -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태도 (40점)	평정자·확인자 실적가점(각 7점) 가점요소 별 실적 내용에 대한 평가 (요소별 비중반영) * 실적가점 평가서작성	지급대상인원 전부에 대하여 지급단위별 순위결정(114점) *성과상여금 지 급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확인 자가 작성함)
기관장실적가점 (6점) * 지급단위별 성 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의 평가 자료 준비 (인사담당부서)	지급단위별 성과 상여금 심사 대 상인원명부순위 결정(120점 만점) *성과상여금 심 사대상자명부 작성 (인사담당부서 작성)	지급대상인원 전 부에 대하여 성 과급심사위원회 의 심사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및 지급등 급결정

개정안

6급 이하 공무원 평가절차도		
근무성적 평정점수 (100점) - 근무성적 평정 중 -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태도 (40점)	평정자·확인자 실적가점(각 7점) 가점요소 별 실적 내용에 대한 평가 (요소별 비중반영) * 실적가점 평가서작성	지급대상인원 전부에 대하여 지급단위별 순위결정(114점) *성과상여금 지 급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확인 자가 작성함)
기관장실적가점 (6점) * 지급단위별 성 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의 평가 자료 준비 (인사담당부서)	지급단위별 성과 상여금 심사 대 상인원명부순위 결정(120점 만점) *성과상여금 심 사대상자명부 작성 (인사담당부서 작성)	지급대상인원 전 부에 대하여 성 과급심사위원회 의 심사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및 지급등 급결정

IV. 성과급심사위원회

1. 성과급심사위원회 설치

가.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하여 지급단위기관(소속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에도 둘 수 있다. 다만, 4급 공무원 및 별정직 중 비서관·비서에 대한 위원회는 두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권한

가. 5급(과장급 직위 제외)이하 공무원에 대한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 결정

IV. 성과급심사위원회

1. 성과급심사위원회 설치

가. -----

 -----, 별정직
 중 비서-----
 -----.

2. 위원회의 권한

가. 6급 이하-----

현 행

지급단위(직급 또는 계급) :

서 열	소 속	직 급	성 명	실적 내용	평정자 가점 (7점)	확인자 가점 (7점)	총 점 (14점)

평 정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 실적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가능

※ 확인자단위의 지급단위별 평정대상자 전원을 통합하여 평가한 후 평정자 전원과 확인자가 함께 연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함.

개 정 안

지급단위(직급 또는 계급) :

서 열	소 속	직 급	성 명	실적 내용	평정자 가점 (7점)	확인자 가점 (7점)	총 점 (14점)

평 정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 실적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가능

※ 확인자단위의 지급단위별 평정대상자 전원을 통합하여 평가한 후 평정자 전원과 확인자가 함께 연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함.

● 신법령 목록 (2017. 7. 1. ~ 7.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177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2017. 7. 11	19048	3
대통령령제2817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8179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818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18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818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8183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총리령】				
총리령1402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3	19042	3
총리령제1403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6	19045	4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3	19042	9
국토교통부령제43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5
해양수산부령제243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중정정	"	"	16
기획재정부령제627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5	19044	4
해양수산부령제246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국방부령제92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10	19047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11	19048	19
국토교통부령제43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
국토교통부령제43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7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12	19049	6
여성가족부령제106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13	19050	4

기획재정부령제62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14	19051	4
여성가족부령제10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1